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8월 8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6년 8월 22일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16.11.17.)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7.2.22.)에 2017년 2월 13일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바로 회부함.

다. 2017년 7월 11일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17.11.2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8.2.21.)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마.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8.2.2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이상 3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매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 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 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20조제3항제1호).

-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 마.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 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안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6호 중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를 “제15조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상대방이나 피해자가”를 “피해자가”로, “보호·선도·교육”을 “보호·지원·교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를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의 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를 “피해아동·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를 “피해아동·청소년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지원”을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으로 한다.

제38조 앞의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을 삭제한다.

제38조의 제목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을 “(성매매 피해아

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로,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제2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대상아동·청소년의”를 각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른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제38조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지
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6.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를 각각 제4장부터 제6장까지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제5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제60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u>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u></p> <p>7. “<u>대상아동·청소년</u>”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u>아동·청소년을 말한다.</u></p> <p>8.·9. (생략)</p> <p>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u>상대방이나 피해자가</u>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u>보호·선도·교육</u>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u>제15조까지의</u>----- ----- -----.</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8.·9.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회의 책임) ----- ----- -----<u>피해자가</u>----- ----- ----- ----- -----<u>보호·지원·교육</u>----- -----.</p> <p>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p>

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3. (생략)

④ (생략)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제301
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
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의 죄

2.·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

----- 피해아동·청소년
년의-----

-----.

② (생략)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② (현행과 같음)

③ ----- 피해아동·청소년의-----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삭 제>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삭 제>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삭 제>

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제39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
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
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
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
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
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
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
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
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
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

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삭 제>

<삭 제>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략)
2. 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생략)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 4. (생략)

<신설>

<신설>

5. ~ 7.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3. (현행과 같음)
② -----

-----.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 4. (현행과 같음)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7. ~ 9.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른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제38조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

과 사회복지관을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
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청
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
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
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
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
여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보
호시설과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9조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 등 대상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